
라디오방송국 신규허가 백서
-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FM방송국 -

2023. 12.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신규허가 개요	7
1. 신규허가 신청 방송사업자	9
2. 추진 경과	9
3. 신규허가 심사 계획	10
4. 심사항목 및 배점	13
5. 신규허가 여부 등 결정	14
II. 시청자 의견 청취	15
1. 시청자 의견 청취 개요	17
2.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18
3.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21
III.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23
1.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25
2. 세부심사항목별 배점 구성	27
3. 심사평가 방식	28
4. 세부심사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9
IV. 방송국 기술심사	33
1. 신규허가 신청서류 제출 여부	35
2. 신규허가 기술심사 결과	36
V. 신규허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9
1. 신규허가심사위원회 구성	41
2. 신규허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42
3.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	42

4.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43
5. 신규허가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44
6. 신규허가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48
VI.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23.8.9.)	49
VII. 신규허가 심사 결과 공표	53

I. 신규허가 개요

1

신규허가 신청 방송사업자

구분	사업자명	방송국명	매체		합계
			DTV	FM	
라디오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FM방송국	-	1	1

2

추진 경과

- '22. 8. 9.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서 제출
- '22. 8. 11.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서 접수
- '22. 11. 16. ~ '23. 4. 5. 신규허가 신청서 보정
- '23. 4. 7. 신규허가 처리기간 연장 통지
- '23. 6. 7. 신규허가 기본계획* 의결
 *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FM방송국)
- '23. 6. 7. 과기부 기술심사 의뢰(전파법 제34조 심사사항)
- '23. 6. 13.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6. 14 ~ 6. 27, 총 1건 접수)
 * 관보, 홈페이지(방통위·방송사) 게재 및 방송사 공지
- '23. 7. 24. 과기부 기술심사 결과 회신(기술적 조건 충족)
- '23. 7. 24.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대표자·편성책임자, 이상 없음)
- '23. 7. 24. 신규허가 신청서 최종본 제출
- '23. 8. 1. ~ 8. 2. 신규허가 심사위원회 운영
- '23. 8. 9.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의결(교통충남FM방송국)
- '23. 8. 9. 신규허가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공표

3

신규허가 심사 계획

□ 심사 기본 방향

- 신규허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지역적 필요성 등을 중점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청취를 공개적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 7인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7인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구 분	분 야(인원)	비 고
심사위원 (7)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경제·경영·회계분야(1)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1)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기 술 분 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구성절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장을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 구성을 위해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음

○ 심사위원 위촉기준

-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인 자 등

○ 심사위원 결격사유

- 2020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할 사실이 있는 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의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 일정 기간을 정하여 법률·정책·경영·회계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계약
-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인 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법인의 본 신규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심사위원회 운영

○ 기본방향

-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신규허가 신청서류 검토 결과와 의견청취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신규허가 여부, 신규허가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 필요시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
- 의견청취
 - (청취내용)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 ※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 또는 심사위원회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심사평가 방안
 - (평가원칙) 허가신청서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평가
 - (평가방식)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계량 평가 : 재정력 능력, 법령위반 및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를 반영
 - 비계량 평가 :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각 등급 구간 내에서 적절한 점수로 환산하여 평점을 부여

< 비계량 평가 환산점수 기준 >

구분	등급	내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4 심사항목 및 배점

-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FM라디오 방송국이 개설되는 점을 감안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심사항목의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심사항목별 배점(안) >

심사항목	배 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50(비계량)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50(비계량)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300(비계량)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00(비계량)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0(계량·비계량)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50(비계량)
7. 신청법인의 최근 5년간 관련법령 위반사례	감점(계량)
계	1,000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하는 경우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과
- 전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단축 가능

Ⅱ. 시청자 의견 청취

1**시청자 의견 청취 개요**

○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접수

* (방송법 제10조제2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접수기간 : 2023. 6. 14.(수) ~ 6. 27.(화), 약 2주 간

○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공고방법

- 관보 및 홈페이지(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게재

- 허가 심사 대상 방송국의 안내방송(음성) 고지

매체	고지 방법
방송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등 게시판을 통해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 게시 ※ 시청자의견청취공고게시물은 의견청취 기간 중 게시판 첫 페이지에 상시 노출 되어야 함
라디오방송	○ 1일 2회 이상(주시청시간대 1회이상) ○ 방송진행중고지, SB 고지 등 방송사 자율결정

※ 주시청시간대 : 평일(19:00~23:00), 주말·공휴일(18:00~23:00)

2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048호

도로교통공단의 충남지역 FM방송국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방송통신위원장

교통충남FM 방송국 신규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 신청인 : 도로교통공단
- 신청 방송국 : TBN 교통충남FM방송국
- 신청 방송구역 : 서산시·태안군·당진시·홍성군·예산군 일원, 보령시·청양군 일부

2. 의견 제출 기간

- 2023. 6. 14.(수) ~ 2023. 6. 27.(화)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3. 6. 27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 제출방식 :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허가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4. 의견제출 내용

- 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관련)
 -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의견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3)

3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 접수 현황

- 총 2건 중 찬성 1건 및 의견제시 1건 접수

< 시청자 의견청취 접수 현황 >

방송사업자명		합계	시청자 의견청취 접수건수			
			찬성	조건부 허가	반대	의견 제시
합 계		2	1	-	-	1
라디오	도로교통공단	2	1	-	-	1

□ 시청자 의견청취 주요 내용

연번	시청자 의견청취 주요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 TBN 충남교통방송이 조속히 설립 하여 충청남도 남·북부지역 난청해소와 그 지역의 육상교통과 해상교통 정보를 알리는데 주력 요망 ○ (의견제시) 향후, 전남동부권을 위하여 TBN 전남교통방송이 여수에, 경기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TBN경기교통방송이 수원 또는 화성에 설립 요청

Ⅲ.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1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 심사항목별 평가 배점

- 심사항목별 평가 배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23.6.7, 라디오방송국 (FM) 신규허가 기본계획)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 라디오방송국 신규허가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 >

심사 항목	배 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50(비계량)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50(비계량)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300(비계량)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00(비계량)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0(계량·비계량)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50(비계량)
7. 신청법인의 최근 5년간 관련법령 위반사례	감점(계량)
계	1,000

□ 신규허가 심사평가 항목 관련 참고자료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 제1항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제3항

<방송법 관련 조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방송법 제17조제3항
<p>제10조(심사기준·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p>제17조(재허가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2

세부심사항목별 배점 구성

□ 기본 원칙

-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신규허가 기본계획("23.6) 등을 고려하여 구성

□ 세부심사항목 배점 구성

심사 항목	배 점 (총1천점)	평가 지표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50	비계량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	100	
② 청취자 권익 실현 방안	5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50	비계량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적정성	150	
② 방송프로그램 제작·수급계획의 적정성	100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300	비계량
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150	
② 지역성 구현 및 지역사회 기여 계획의 적절성	150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00	비계량
①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의 적정성	30	
② 투자계획의 적정성	40	
③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30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0	비계량 계량 비계량 비계량
①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40	
② 신청법인의 재무적 우수성	50	
③ 방송시설 구축계획의 적정성	30	
④ 난청 및 혼신 해소 계획	30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50	비계량
① 방송발전 기여 의지	30	
② 방송수익의 사회 환원 계획의 우수성	20	
7. 신청법인의 최근 5년간 관련법령 위반사례	감점	계량

□ 평가원칙

- 신규허가 신청서 및 신청인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심사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

□ 평가방식

-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계량 평가 : 재정력 능력, 법령위반 및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를 반영
 - 비계량 평가 : 평가항목별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 구간 내에서 적절한 점수로 환산하여 평점을 부여

< 비계량 평가 환산점수 기준 >

구분	등급	내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허가 대상 사업자의 최종 점수는 세부 심사항목별 계량평가 점수와 비계량평가 점수의 합으로 구함
 - 계량평가 : 재무제표 등을 통해 정량적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를 부여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 비계량평가 : 세부심사항목별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4

세부심사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150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	10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실적 등 ○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계획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소수자 관련 프로그램,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편성 계획의 적정성 - 재난방송 실시계획의 적정성 등 ○ 대표자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의지 (의견청취 진행 시)
② 청취자 권익 실현 방안	5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취자 권익 보호 계획의 적정성 ○ 자체 심의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조직 운영계획 및 민원처리계획의 적정성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250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의 적정성	15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 기본방향의 적정성 ○ 편성 비율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국 목적과 프로그램과의 부합성 - 편성계획의 적정성
② 방송프로그램 제작·수급 계획의 적정성	10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방송국 자체제작 비율 ○ 제작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제작 계획의 적정성 - 제작비 적정성 등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300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15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 방송국 신설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진출의 당위성 등 ○ 해당 지역의 방송 환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라디오 방송현황 및 종류, 난청 현황 등 ○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② 지역성 구현 및 지역사회 기여 계획의 적절성	15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기여방안과 실현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발전, 일자리 창출, 문화 보존 및 발전 등 사회적 기여 관련 계획 등 ○ 캠페인·행사·기부 등 사회 및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계획의 적정성 등

④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100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①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의 적정성	3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운영의 기본방침 및 효율성 강화 계획 ○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구성 및 인력채용·운용 계획의 적정성 - 인건비의 적정성
② 투자계획의 적정성	4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관련 투자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 - 직원교육 투자, 연구개발 투자 계획
③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3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경영·편성 분리 등의 적정성

⑤ 재정 및 기술적 능력(150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①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4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지출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② 신청법인의 재무적 우수성	50점	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인의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성 및 수익성 관련 재무비율 등 참고
③ 방송시설 구축계획의 적정성	3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 시설 및 설치장비의 적정성 ○ 시설 투자금액의 적정성 ○ 방송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④ 난시청 및 혼신 해소 계획	30점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구역 내·외 난청 및 혼신 해소 계획의 적정성 ○ 방송보조국 등 가청구역 확대 계획의 적정성

○ 신청법인의 재무적 우수성(평가항목 5-②, 50점)

- 신청법인의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관련 지표 중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최근 5개년('18, '19, '20, '21, '22년) 재무지표를 각 연도별로 1 : 2 : 3 : 4 : 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

구분	배점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수	12.5점	15%이상	15%이상	25%이하	300%이상
우	10점	10%이상	10%이상	50%이하	200%이상
미	7.5점	5%이상	5%이상	100%이하	100%이상
양	5점	0%이상	0%이상	200%이하	50%이상
가	2.5점	0%미만	0%미만	200%초과	50%미만

- $[(2018년\ 평가점수 \times 1 + 2019년\ 평가점수 \times 2 + 2020년\ 평가점수 \times 3 + 2021년\ 평가점수 \times 4 + 2022년\ 평가점수 \times 5) \div 15]$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50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① 방송발전 기여 의지	30점	비계량	○ 향후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 의지 및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실행의지 - 외주상생 계획 등 포함
②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의 우수성	20점	비계량	○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의 적정성

⑦ 신청법인의 관련법령 위반사례(감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① 방송관계법령 위반사례	감점	계량	○ 위반내용별로 감점기준안 마련 - 주의 -1점, 경고 -2점,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등 -4점, 과태료 -4점, 시정명령 -8점, 과징금 -10점~-15점

○ 신청법인의 최근 5년간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례(평가항목 7-①, 감점)

- 신청법인의 심의제재 현황 및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내역에 따라 감점
- 최근 5년간의 위반사례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합산한 후 연평균 감점 수치를 산정(5년간 총 감점 ÷ 5)
- 위반 건당 감점 기준
 - 주의 - 1점
 - 경고 - 2점
 -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등 - 4점
 - 과태료 - 4점
 - 시정명령 - 8점
 - 과징금 - 10점(5천만원 이하), -15점(5천만원 초과)

IV. 방송국 기술심사

1

신규허가 신청서류 제출 여부

- 방송법 제9조제1항, 전파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심사 의뢰와 함께 신규허가 기술심사 관련서류를 아래와 같이 송부

※ 관련 문서

-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1256, 2023.6.7.)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허가 관련 기술심사 의뢰

【신규허가 기술심사 의뢰 서류】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1. 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서 각 1부	○
2.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각 1부	○
3.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첨부서류 포함) 각 1부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 표시도	○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 배치도	○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
(5) 공중선계 구성약도	○
(6) 송신 공중선 지향특성도	○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 감시장치 계통도	○
4. 시설설치계획서 각 1부	○

2

신규허가 기술심사 결과

□ 심사 개요

○ 신규허가 심사 대상 1개 지상파방송국 기술심사 실시

- 방송사 제출서류 보완·검토 등을 통해 전파법령에 규정된 기술 심사 항목에 대한 적합여부 심사

< 신규허가 대상 방송국 현황 >

(단위: 국)

구분	UHD	DTV	AM	FM	DMB	합계
방송국	-	-	-	1	-	1

□ 심사 결과 : 적합

□ 기술심사 세부내역

심사항목	전파법령 근거조항	심사결과
① 주파수 지정 가능 여부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적합 - 초단파(FM)방송용 채널
②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법 제34조 제2항제2호	• 준공검사 시 최종 확인
③ 무선종사자 배치계획 적합 여부	법 제34조 제2항제3호	• 적합(준공검사 시 최종 확인) -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 및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4호에 의거 - (송주소) 무선설비 또는 방송통신 산업기사 1명 - (연주소) 무선설비 또는 방송통신 기능사 2명
④ 방송국의 개설조건 충족 여부	법 제34조 제2항제4호	• 적합
④-1.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치 여부	법 제35조 제1항	• 적합 - 시뮬레이션 결과, 3%내외의 간섭이 예상되나, 대부분 산악지역으로 보임

심사항목	전파법령 근거조항	심사결과
④-2. 송신안테나 설치장소 적합 여부	영 제57조 제1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 - 기존 교통원효봉방송보조국을 활용하며, 출력 증강으로 기존 방송구역보다 13%가 확대되어 충분한 방송구역을 확보 전파월경도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
④-3. 송신안테나 높이·실효 복사전력·지향특성 적합 여부	영 제57조 제1항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 : ④-2 참고
④-4. 방송구역이 유사한 방 송국의 송신 안테나에 근접하여 송신안테나 설치 여부	영 제57조 제1항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 - KBS, MBC , EBS 등 동일 지역에 송신안테나 설치
⑤ 방송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충족 여부	법 제34조 제2항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
⑤-1.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의 확실 여부	영 제55조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 기 설립 법인(도로교통공단)
⑤-2. 연주소 시설의 보유 여부	영 제55조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 : 연주소 시설 보유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591)
⑤-3. 시설설치계획의 합리성 여부	영 제55조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 -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등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
⑤-4. 기술적 능력의 보유 여부	영 제55조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 - 도로교통공단은 12국의 FM방송국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는 중으로 충분한 기술적 능력 확보

□ 부관 사항

- 기존 방송국에 혼신을 줄 경우 비용 부담 등을 통해 전파 간섭을 즉각 해소하거나 무선국 운용을 중지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방송주파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재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 이용자 편의 및 주파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라디오 신기술(RDS2 등) 도입에 적극 노력할 것

V. 신규허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신규허가심사위원회 구성

-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미디어 분야(2인), 경제·경영·회계 분야(1인), 법률 분야(1인), 기술 분야(1인), 시청자·소비자 분야(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

< 라디오방송국 신규허가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

분야	성명	현 직
심사위원장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방송·미디어 (2인)	홍문기	한세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박성순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조교수
법률 (1인)	이희영	법률사무소 지후 변호사
경제·경영·회계 (1인)	하종수	미립회계법인 이사
기술 (1인)	김흥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시청자·소비자 (1인)	오혜란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사무국장

2

신규허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 운영 기간 : 2023. 8. 1. ~ 8. 2.(총 2일)

구 분	일정	주요 내용
제1일차 심사위원회	'23.8.1.(화)	신청서 및 사업자 의견청취 질의사항 검토,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제2일차 심사위원회	'23.8.2.(수)	심사위원 의견서 및 허가조건 작성

○ 심사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상황실

3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

○ (청취내용)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취대상) 도로교통공단

○ (청취일정)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중 1일(8.1.)

○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 불가피한 경우 방통위(방송정책국)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 (평가방법)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라디오방송국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의견청취 세부일정 >

일정	주요 내용	비고	
8.1.(화)	13:30 ~ 14:50	신청서 및 사업자 의견청취 질의사항 검토	심사위원
	15:00 ~ 16:0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도로교통공단)	심사위원장

붙임: 의견청취 참석자 명단

사업자	구분	성명·직위
도로교통공단	대표자	이주민 이사장
	방송편성책임자	엄관식 편성제작처장
	배석자	이우호 방송본부장
	배석자	김민식 방송관리처장
	배석자	안만홍 방송기술처장
	배석자	이준상 방송관리처 과장

4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개요

- 관보 및 홈페이지(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게재
- 허가 대상 방송국의 안내방송(음성) 고지

매체	고지 방법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2회 이상(주시청시간대 1회 이상) ○ 방송진행중 고지, SB 고지 등 방송사 자율 결정

※ 주시청시간대 : 평일(19:00~23:00), 주말·공휴일(18:00~23:00)

접수 결과

- 총 2건 중 찬성 1건 및 의견제시 1건

심사평가 반영

- 접수된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는 신규허가 심사위원회 보고(8.1. 1차 심사위원회) 후 신규허가 심사 시 심사위원들이 관련 심사항목에 반영하여 평가

2023년도 라디오 방송국 신규허가 심사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이 신청한 교통충남 FM방송국 신규허가에 대하여, 허가신청서 검토, 대표자 의견청취, 심사평가 등 허가 심사를 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종합 의견

- 도로교통공단은 기존에 방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방송국 운영, 시설구축 등에 문제가 없으며, 충남 지역에 대한 교통 FM 방송국 설립 필요성과 적절성이 인정됨
 - 특히 충청남도의 심각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지역민의 교통안전 의식개선,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남 FM방송국에 대해 신규허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교통대전 FM방송국과 역할이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며, 충남지역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작·편성이 필요함
- 아울러, 세부 심사의견에서 제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은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제안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참고하여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할 것을 건의함

2

세부 심사 의견

- (예산편성 절차) 공공기관으로서 방송국 설립과 관련된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기관의 허가절차가 개시되기 전 설립예산을 신청·확보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편성) 방송편성에서 보도를 제외하고, 인접 TBN 타 방송국과 차별화된 지역 특화 프로그램 비중 확대, 지역민 참여유도 등 방송의 지역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할 것
- (난청해소) 난청 발생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실질적인 난청 해소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 (기술) 현재 교통원효봉FM방송보조국 시설을 송신소로 변경함에 있어 출력 증강에 따른 추가 안테나 설치 등으로 인한 송신 시설의 안정성 검토 필요
-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환원)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등용에 기여하고, 공익 캠페인, 기부 방송 등 방송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할 것
- (관련법령 위반)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 형	내 용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 방송 편성에서 교통·기상·재난 관련 정보는 포함하되 보도는 제외할 것 ○ 인접 TBN 타 방송국과 차별화된 지역 특화 프로그램 비중 확대, 지역민 참여 유도 등 방송의 지역성을 제고할 것 ○ 기존 방송국에 혼신을 줄 경우 비용 부담 등을 통해 전파 간섭을 즉각 해소하거나 무선국 운용을 중지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방송주파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재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 이용자 편의 및 주파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라디오 신기술(RDS2 등) 도입에 적극 노력할 것 ○ 도로교통공단(12개 방송국)이 부여받은 기존 재허가 조건을 준수할 것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으로서 방송국 설립과 관련된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고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지상파라디오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난청 발생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난청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등용에 기여하고, 공익 캠페인, 기부 방송 등 방송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도로교통공단(12개 방송국)이 부여받은 기존 재허가 권고사항을 준수할 것

2023. 8. 2. (수)

심사위원장

이상인 (인)



심사위원

홍문기 (인)



박성순 (인)



하종수 (인)



이희영 (인)



김홍목 (인)



오혜란 (인)



6

신규허가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 심사평가 점수

방송사	방송국	총점 (1000점 만점)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FM방송국	738.76점

□ 심사 항목별 평가점수

심사 항목	배점	평가점수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50	118.33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	100	80
② 청취자 권익 실현 방안	50	38.33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50	183.33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적정성	150	110
② 방송프로그램 제작·수급계획의 적정성	100	73.33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300	230
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150	120
② 지역성 구현 및 지역사회 기여 계획의 적절성	150	110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00	71
①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의 적정성	30	21
② 투자계획의 적정성	40	28
③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30	22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0	108.17
①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40	30.67
② 신청법인의 재무적 우수성	50	26.5
③ 방송시설 구축계획의 적정성	30	26
④ 난청 및 혼신 해소 계획	30	25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50	31.33
① 방송발전 기여 의지	30	20
② 방송수익의 사회 환원 계획의 우수성	20	11.33
7. 신청법인의 최근 5년간 관련법령 위반사례	감점	-3.4
총 점	1,000	738.76

VI.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23.8.9.)

□ 지상파방송사업자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 라디오방송국 신규허가 신청한 1개 방송사 1개 방송국

구분	법인명	방송국명	매체 구분	평가점수	유효기간
1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FM방송국	FM	738.76	3년

□ 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 허가 조건

허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 방송 편성에서 교통·기상·재난 관련 정보는 포함하되 보도는 제외할 것 ○ 인접 TBN 타 방송국과 차별화된 지역 특화 프로그램 비중 확대, 지역민 참여 유도 등 방송의 지역성을 제고할 것 ○ 기존 방송국에 혼신을 줄 경우 비용 부담 등을 통해 전파 간섭을 즉각 해소 하거나 무선국 운용을 중지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방송주파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재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 ○ 이용자 편의 및 주파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라디오 신기술(RDS2 등) 도입에 적극 노력할 것 ○ 도로교통공단(12개 방송국)이 부여받은 기존 재허가 조건을 준수할 것

○ 권고사항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으로서 방송국 설립과 관련된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고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지상파라디오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난청 발생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난청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등용에 기여하고, 공익 캠페인, 기부 방송 등 방송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도로교통공단(12개 방송국)이 부여받은 기존 재허가 권고사항을 준수할 것

VII. 신규허가 심사 결과 공표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062호

라디오 방송국(FM) 신규허가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공표

- 교통충남FM방송국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남FM 방송국에 대한 신규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 8. 9.

방송통신위원회

1. 신규허가 심사결과

방송사명	대상 방송국명	심사결과	허가유효기간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FM방송국	허가	개국일로부터 3년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 여부

- (접수기간) 2023. 6. 14. ~ 6. 27.(2주간)
- (접수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 (공고방법) 관보, 홈페이지(방통위, 사업자), 방송국의 안내방송(음성)

매체	고지 방법
라디오	○ 1일 2회 이상(주시청시간대 1회 이상) ○ 방송진행중 고지 등 방송사 자율 결정

- (접수결과) 총 2건 중 찬성 1건 및 의견제시 1건
-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는 신규허가 심사 위원회에 보고(8.1)하여 심사에 반영하였음. 끝.